

[대만] 2016년 11월 수출현안 · 수입제도 모니터링

I 수입제도 변경사항 / 수출현안

1. 대만 포장 식용염의 요오드(iodin) 표시규정 제정(訂定「包裝食用鹽品之碘標示規定」)

* 문서발송일자 : 2016년 11월1일, 대만 위생복지부 공고 (문서번호 : 部授食字第1051303180號 公告)

○ 주요내용

- 본 규정은 「식품안전위생관리법」 제 22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함
 - 요오드화칼륨(potassium iodide) 및 요오드산토륨칼륨(potassium thorium iodate)을 함유한 포장 식용염 상품에 그 품명, 경고어 및 영양표시 내 요오드 성분 관련 내용 표기를 의무화하였고, 아래 규정을 준수해야 함
 1. 제품명은 「요오드(iodin) 소금」, 「요오드(iodin) 함유 소금」, 「요오드(iodin) 첨가 소금」으로 규정함
 2. 경고어는 「본 제품은 필수영양소인 요오드를 첨가 됨 갑성선 환자는 의사와 상의 후 사용」이라는 표시해야 함
 3. 「포장식품영양표시준수사항」에 따라 영양표기를 해야 하고 상품의 총 요오드 함량을 추가 기입해야함
 - 요오드화칼륨(potassium iodide) 및 요오드산토륨칼륨(potassium thorium iodate) 미첨가된 포장 식용염은 「요오드(iodin)는 필수 영양소이다 본 제품은 요오드(iodate)를 첨가 하지 않음」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함
 - 플루오린화 칼륨(Potassium fluoride) 및 플루오린화 나트륨(sodium fluoride)을 동시 첨가된 포장 식용염 상품은 「플루오린 표시 규정」의 부합하여야 하며 제품명은 2가지 성분으로 「00소금」 「00포함 소금」 「00 첨가 소금」으로 표기하여야 함
- 상기 조항의 「00」은 플루오린 요오드(fluorine iodine) 혹은 요오드 플루오린(iodine fluorine)로 명시 하여야 함
- 경고어의 표기글자의 길이 및 넓이는 최소 4mm를 초과하여야 하며 배경색과 다른 색으로 글자를 표기하여야 함
 - 수정 규정 시행일 : 2017년 7월 1일

○ 시사점

- 대만 소비자들의 적당량의 요오드 섭취할 것을 권장하기 위해 상품 내 요오드 성분 표기를 명확히 표기할 것을 의무화하였다. 동 영양소의 적절한 섭취량의 범위 및 영양성분을 표기하여 대만 소비자가 구매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. 요오드는 필수적인 영양소이므로 별도 표기화되었으므로 요오드가 많이 함유된 한국 주요 식품 홍보를 통해 시장확대를 모색할 방안 모색 필요

<자료원 : 대만위생복지부 식품약물관리서>

http://www.fda.gov.tw/TC/newsContent.aspx?id=21407&chk=80e0259f-2dad-4dee-8901-5238aca2fc06¶m=pn&cid=3&cchk=46552e96-810a-42c3-83e1-bd5e42344633#.WE_cclJ96U

1. “508” 수입규정에 따른 수입 검사 대상 추가 지정

○ 주요내용

- 수입규정 “508”는 화물분류표의 제품 중 식품 혹은 식품 첨가물(향료 포함)용으로 사용될 시 「식품 및 관련 상품 수입 검사 방법」에 의거하여, 대만 위생복지부 식품약품관리서에 식품 수입 검사를 신청해야 함

규정 번호	수입 규정 내용
F01	수입상품은 행정원 위생복지부가 발부한 「수입식품 및 관련 제품 검사방법조문(輸入食品及商品相關驗辦法條文)」의 규정에 따라 경제부 표준 검역국에 수입 검사를 신청함
831	(1) 식품첨가물 또는 비식품첨가물의 식품원료 수입 시 508 규정에 따라 처리함 (2) 의약품 수입 시 503규정에 따라 처리함 (3) 일반 공업용 유지 수입 시 251규정에 따라 처리함 (4) 바이오디젤용 유지 수입 시 255 규정에 따라 처리함 (5) 수출입업체 등록 방법에 의거해 등록된 수입자가 상술 주관기관에 수입허가 문서를 신청해야 하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지 수입 시 경제부 국제무역국에 수입허가 문서를 신청해야 함 (6) 본 항 물품이 주관기관의 수입허가 문서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수입을 허용하지 않음
508	1. 수입식품 첨가물은 아래의 규정의거로 진행: - 위생복지부는 발표한 「식품첨가물 사용 범위 제한 및 표준 규격」의 단일 식품첨가물 (향료 외)은 위생복지부에서 허가한 식품첨가물 허가증 복사본을 첨부 하여야 하며 F01 규정으로 진행처리 - 향료 혹은 복합 식품 첨가물에 속할 경우에는 F01 규정으로 진행처리 - 비식품첨가물인 식품 원료 수입 시 F01 규정으로 진행 - 식품 첨가물의 샘플, 증정품에 속할 경우 위생복지부가 허가한 「제품수입동의신청서(식품 첨가물 샘플)」을 첨부해야 함 - 식품 및 식품첨가물 용도로 수입되지 않을 경우 수입신고서에 전용코드인 DH99999999508로 기입 상기 규정(식품검사신청)을 따르지 않아도 됨

< 수입 규정 "508" 에 해당되는 신규 추가 성분>

수입 세관 코드	품 명	수 입 규 정 (A)	준비문서
1518.00.20.00-9	탈수파자마유(dehydrated castor oil)	801	검사문건준비 및 심사 신청 <준비 문건> - 식품 및 관련제품 검사신청서 - 식품 및 관련제품 자료표 - 위생복리부에서 발 행한 식품첨가물 관 련 허가증 - 세관화물신고 대리 대행사 인수서
1520.00.00.00-9	글리세롤; 글리세롤 광천수 글리세가성소다 (glycerol, crude; glycerol waters and glycerol lyes)	831	
2939.99.90.90-6	기타 천연 혹은 합성 방법으로 재조된 식물 알 카로이드(alkaloids) 및 염류(salts) 에테르류 (ethers) 에스터류(esters) 기타파생물(other derivatives)	808	
3001.20.00.00-9	샘체 기타 기관 혹은 기타분비물의 추출물 (Extracts of glands or other organs or of their secretions)	808	
3003.90.10.00-9	비타민 함유 및 제2936제 제품의 기타 의약제 조물(other medicaments, containing vitamins or other products of heading 2936)	818	
3004.50.00.00-9	비타민 함유 및 제2936제 제품의 기타 의약제 조물(other medicaments, containing vitamins or other products of heading 2936)	818	

- * 수입규정(A) : 식품 및 식품첨가물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수입규정으로, 해당 분류 코드의 상품
이 식품 및 식품 첨가물로 수입 시 "508" 수입규정에 따라 수입식품검사를 신청해야 함
- * 자료원 : 대만 위생복리부 <http://www.fda.gov.tw/>

○ 시사점 : 상기 식품첨가물을 첨가한 식품은 對대만 수출 시 주의 필요

III 통관문제사례

○ 11월분 통관사례 DB 참고(3건)

국 가	발생일자 (발표일자)	통관번호	CCC CODE	부 류	상품명(제조사)	중 량 (kg)	검역 소	불합격사유	조치사항
대 만	2016.10.21(2016.11.2 2)	IFT05JW09 50302	07049010 008	신 선	배추 (NH TRADING CO.,LTD)	15,75 0	台北	잔류농약 Flonicamid 0.07ppm 검출	반송 혹은 폐기
대 만	2016.10.26(2016.11.2 9)	IFB05IK814 8004	20059990 996	가 공	단무지(SAJO DAERIM CORP)	1,200	台北	감미제 saccharin 0.65 g/kg 검출	반송 혹은 폐기
대 만	2016.10.25(2016.11.2 9)	-	07049010 008	신 선	배추 (NH TRADING CO.,LTD)	15,7 50	台北	잔류농약 Flonicamid 0.04ppm 검출	반송 혹은 폐기

자료원 : 대만 위생복리부 <https://consumer.fda.gov.tw/Food/UnsafeFood.aspx?nodeID=170#>